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의자
제 85 호	제 28 차	1989. 12. 7	총재 김건

의안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: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을 별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

제의취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시책의
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1764

36
45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범구조화

한국은행법 제 7조

① (생 략)

- ② 금융문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문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문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·운영·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문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- ① (생 략)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 1조~제 2조 (생 략)	<p>제 1조~제 2조 (현 행 과 같 음)</p> <p>제 3조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<별표>의 "여신 금지부문"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.</p> <p>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</p> <p>의하여 취급하는 여신과 수하 등 현재지번으로</p> <p>자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한국은행</p> <p>승인을 따로 인정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</p> <p>한다.</p> <p>(1) 여신금지부문</p> <p>제 3조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<별표>의 "여신 금지부문"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.</p> <p>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</p> <p>의하여 취급하는 여신과 수하 등 현재지번으로</p> <p>자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한국은행</p> <p>승인을 따로 인정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</p> <p>한다.</p> <p>(2) 수하 등 현재지번으로 자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</p> <p>위해 한국은행 승인이 따로 인정하는 여신</p> <p>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'주택건설촉진법'에 의거</p> <p>규정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금보증</p>	<p>-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행되는</p> <p>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지금보증을 여신</p> <p>금지대상에서 제외</p>
제 4조~제 12조 (생 략)	<p>제 4조~제 12조 (현 행 과 같 음)</p> <p>부 록</p> <p>이 규정은 1999. 12. 8. 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시행일자 명시</p>